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재산세 감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조례 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3조제2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을 100% 면제로 확대

3. 개정근거

- 가. 행정안전부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 시달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628,2009. 3. 12)
- 나. 「지방세법」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9. 4. 9. ~ 2009. 4.29)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9.04.30)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라.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2007년 1월 1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구역 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u>2007년 1월 1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구역 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u>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u></p>